

의안번호	제 472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3 월 일 (제 288 회)

**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3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##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7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3월 2일  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국가기관에서 징수하는 지방소비세를 시도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 개정, 시행(‘10.1.1)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임

### 2. 주요내용

- 지방소비세액을 재정보전금 재원에 포함(안 제4조)

#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### 5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(기간 ‘10. 2. 5 ~ 2. 24)

### 6. 부패영향평가 : 이견없음

### 7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(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)”를 “다음 각 호의 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·군에서 징수하는 도세(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의 총액
2. 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·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

제6조제1항 중 “도 전체의 도세 징수실적”을 “도 전체의 도세징수실적(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공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재정보전금의 재원) ①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시·군에서 징수하는 도세(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)의 27퍼센트(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)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4조(재정보전금의 재원) ①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(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)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·군에서 징수하는 도세(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의 총액</li> <li>2. 도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해당 시·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</li> </ol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재정보전금의 산정·배분방법) ①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----- -----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 징수 실적에서 당해 시·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,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(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6조(재정보전금의 산정·배분방법) ① 일반재정보전금의 산정방법은----- -----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 전체의 도세 징수실적(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)에서 당해 시·군의 도세징수실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,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정력지수(「지방교부세법」에 따라 산정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재정법

제29조(시·도의 시·군에 대한 재정보전 등) ① 시·도지사(특별시장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(인구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)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·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1. 시·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·도세(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,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의 총액
2. 해당 시·도(특별시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·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·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, 징수실적(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), 해당 시·군의 재정사정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관할구역의 시·군에 배분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법」 제53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·군에 배분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1.1]